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63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보궐위원 발생시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잔여임기가 아닌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경우 위원별 임기 관리가 어렵고 반복되는 해·위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수정함.
-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원칙을 담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상 등에 관한 기본법」도 ‘윤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수정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보궐위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수정함(안 제10조제4항).
- 법령과 일치된 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19조제1항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4항 단서 중 “새로이 시작한다”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개정안 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 ----- -----	1. (개정안과 같음)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촉직 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정보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④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고려”를 “기본이념을 충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과의 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의견 반영

3. 정보화의 건전한 활용과 안전망 구축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 교육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7조,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위촉직

- 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정보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소집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구성과”를 “설치와”로 한다.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6조와 제17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정보보안이 검증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가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관계자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와 제19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보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신 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보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2조에 따른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 교육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제3조 (생략)	제5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보호자 및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

제2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 -----  
-----  
----- 기  
본이념을 충족-----.

1. -----  
-----  
-----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
2. 민간과의 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의견 반영
3. 정보화의 건전한 활용과 안전망 구축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다른 -----  
-----  
-----  
-----  
-----.

제7조 ~ 제8조 (현행 제6조부터 제7조 까지와 같음)

제15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  
연구정보원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  
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신설>

-----  
----

2. 위촉직

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정보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  
원

<삭제>

④ 제3항제2호-----  
----- 한 차례만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⑦ 삭제

<신설>

제1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회의 등) ① -----

-----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4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  
기술 등의 활용 지원) (생 략)

<신 설>

제17조(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  
리 의식 제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8조 · 제19조 (생 략)

② ----- 설치와 -----  
-----  
--.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  
조와 같음)

제18조(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  
기술 등의 활용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감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정보보안이 검증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가 학교 교육활동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  
리 의식 제고) ① (현행과 같음)

③ 교육관계자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  
침을 준수하고 관련 교재와 교육 프  
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8조 및 제19  
조와 같음)